

서울특별시 운현궁 및 남산골 한옥마을 문화재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969
------	-----

2012년 10월 12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12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나. 회부일자 : 2012년 8월 20일

다. 상정결과 : 제241회 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12년 10월 5일 상정·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한문철)

가. 제안이유

- 운현궁 및 남산골 한옥마을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시 소유 문화재로서,
- 문화재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행사

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시설 개요

【운현궁】

- 시설명 : 운현궁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114-10
- 시설규모 : 대지 7,100m², 전통한옥 6동 1,299.36m²
- 이용대상 : 이용자 제한 없음(관람료 성인기준 700원)

【남산골 한옥마을】

- 시설명 : 남산골 한옥마을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84-1
- 시설규모 : 대지 7,934m², 건물 1,297m²(한옥5동, 공예전시관, 천우각 등)
- 이용대상 : 이용자 제한 없음(관람료 없음)

■ 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 (2013.01.01 ~ 2015.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운현궁】

- 위탁업무
 - 운현궁 재산 유지·관리
 - 관광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운현궁의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무
 - 전통문화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시가 위탁하는 사업
- 소요예산 : 723,465천원 (2013년)
759,638천원 (2014년)
797,620천원 (2015년)

【남산골 한옥마을】

- 위탁업무
 - 남산골 한옥마을 재산 유지·관리
 - 관광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전통문화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시가 위탁하는 사업
- 소요예산 : 1,508,000천원 (2013년)
1,508,000천원 (2014년)
1,508,000천원 (2015년)

■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조례 제41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운현궁 및 남산골 한옥마을 민간위탁 운영계획
(문화재과-14522, 2012.08.06)

○ 민간위탁 추진현황

【운 현 궁】

- 1차 : 1998.06.18 ~ 2000.12.31(3년, 예문관)
- 2차 : 2001.01.01 ~ 2003.12.31(3년, 서울문화연구소)
- 3차 : 2004.01.01 ~ 2006.12.31(3년, 명원문화재단)
- 4차 : 2007.01.01 ~ 2009.12.31(3년, 예문관)
- 5차 : 2010.01.01 ~ 2012.12.31(3년, 한국의 장)

【남산골 한옥마을】

- 1차 : 1998.06.18 ~ 2000.12.31(3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2차 : 2001.01.01 ~ 2003.12.31(3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3차 : 2004.01.01 ~ 2006.12.31(3년, 화인이엔티)
- 4차 : 2007.01.01 ~ 2007.11.21(11월, 화인이엔티)
- 5차 : 2007.11.22 ~ 2009.12.31(2년1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6차 : 2010.01.01 ~ 2012.12.31(3년, 예문관)

■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다양한 전통 문화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전통문화 전문영역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경우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함.
-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전문직에 대한 신규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 인력의 이중구조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인건비 부분의 중복 지출로 예산 증가가 우려됨.

- 다양한 전통문화행사를 운영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 민간업체가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문화 전문 인력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기회 제공

■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 보호 조례 제41조 제1항, 제2항(시 소유 문화재의 위탁운영)
 - ① 시장은 시 소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 소유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시 소유 문화재는 별표2와 같다.
 - ※ [별표2] 운현궁, 경희궁, 남산골 한옥마을, 몽촌토성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박용훈)

- 동 동의안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적 제257호 운현궁과 서울시지정 민속문화재 남산골 한옥마을을 민간위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임.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개정 2009.07.30)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의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운현궁은 조선조 흥선대원군의 사저였던 곳으로 대지 7,100 m^2 에 전통한옥 6동(1,299.36 m^2)으로 1998년 6월 복원되어 현재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어 오고 있음.
- 동 사업은 1998년 6월부터 ‘예문관’을 시작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3년 단위로 ‘서울문화연구소’, ‘명원문화재단’, ‘예문관’을 거쳐 현재 ‘한국의 장’에 사무위탁을 해오고 있음.
- 운현궁의 운영은 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전통문화재의 가치를 전달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한 것이므로 문화재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이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다만, 운영방식에 있어서는 서울시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직접 운영하는 방식과 전문인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관련업체에 사무위탁을 하는 것은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임.

우선 직영을 할 경우, 새로운 인력 확보 등 행정 절차상 여러 문제를 해결하여야 하는 반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임. 이에 비해 동 사업을 사무위탁 할 경우, 행정절차상의 간편함이 있는 반면, 공개경쟁을 통하여 위탁업체가 계속적으로 변경되어 서울시는 관련 시설의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하기 어려울 것임.

- 남산골 한옥마을 운영의 경우에도 운현궁과 같이 한국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기 위한 문화행사 개최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므로 이미 전문 인력을 갖춘 전문업체에 사무위탁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 다만, 현재는 사무위탁에 있어서 공개경쟁을 통해 업체를 선정한 후 해당 업체가 위탁사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업체 선정후 보다 철저한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임.

- 또한 현재 '북촌한옥마을 북촌문화센터'의 경우 서울시가 전문가를 채용하여 직접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서울시가 목표로 하는 한옥문화의 발전이란 큰 성과를 거두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는 서울시가 문화재 시설을 비롯한 문화공간의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문화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거나 기존의 시설관리공

단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조직을 개편한 후 분야별(체육, 문화, 문화재 등)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질의: 운현궁의 최근 3년간 위탁비용을 살펴보면 2013년도 7억 2,346만원, 2014년도 7억 5,963만원, 2015년도 7억 9,762만원으로 계속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남산골 한옥마을은 3년간 15억 8백만원으로 예산의 변화가 없는데 그 이유는?

답변: 남산골 한옥마을은 동남아 관광객들의 즐겨 찾는 문화시설이나 부대시설에서 수익이 증가하여 위탁비용을 인상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임.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 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운현궁 및 남산골 한옥마을 문화재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969
----------	-----

제출년월일 : 2012년 8월 1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운현궁 및 남산골 한옥마을은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시 소유 문화재로서,
- 나. 문화재 보전, 전승 또는 문화예술 창달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 법인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행사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 개요

【 운 현 궁 】

- 시설명 : 운현궁
-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운니동 114-10
- 시설규모 : 대지 7,100m², 전통한옥 6동 1,299.36m²
- 이용대상 : 이용자 제한 없음(관람료 성인기준 700원)

【 남산골 한옥마을 】

- 시설명 : 남산골 한옥마을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필동 2가 84-1
- 시설규모 : 대지 7,934㎡, 건물 1,297㎡(한옥5동, 공예전시관, 천우각 등)
- 이용대상 : 이용자 제한 없음(관람료 없음)

나. 주요위탁 내용

- 위탁기간 : 3년 (2013.01.01 ~ 2015.12.31)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 운현궁 】

- 위탁업무
 - 운현궁 재산 유지·관리
 - 관광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운현궁의 관람료 징수에 관한 사무
 - 전통문화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시가 위탁하는 사업
- 소요예산 : 723,465천원 (2013년)
759,638천원 (2014년)
797,620천원 (2015년)

【 남산골 한옥마을 】

- 위탁업무
 - 남산골 한옥마을 재산 유지·관리
 - 관광진흥을 위한 전통문화 프로그램 개발·운영
 - 전통문화의 계승·보존을 위하여 시가 위탁하는 사업
- 소요예산 : 1,508,000천원 (2013년)
1,508,000천원 (2014년)

1,508,000천원 (2015년)

다.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

○ 민간위탁 추진근거

- 문화재보호조례 제41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 운현궁 및 남산골 한옥마을 민간위탁 운영계획
(문화재과-14522, 2012.08.06)

【 운 현 궁 】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1998.06.18 ~ 2000.12.31(3년, 예문관)
- 2차 : 2001.01.01 ~ 2003.12.31(3년, 서울문화연구소)
- 3차 : 2004.01.01 ~ 2006.12.31(3년, 명원문화재단)
- 4차 : 2007.01.01 ~ 2009.12.31(3년, 예문관)
- 5차 : 2010.01.01 ~ 2012.12.31(3년, 한국의 장)

【 남산골 한옥마을 】

○ 민간위탁 추진현황

- 1차 : 1998.06.18 ~ 2000.12.31(3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2차 : 2001.01.01 ~ 2003.12.31(3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3차 : 2004.01.01 ~ 2006.12.31(3년, 화인이엔티)
- 4차 : 2007.01.01 ~ 2007.11.21(11월, 화인이엔티)
- 5차 : 2007.11.22 ~ 2009.12.31(2년1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 6차 : 2010.01.01 ~ 2012.12.31(3년, 예문관)

라.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

- 다양한 전통 문화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전통문화 전문영역으로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경우 능동적인 대처가 곤란함.

- 시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전문직에 대한 신규 고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 인력의 이중구조로 운영하여야 하므로 인건비 부분의 중복 지출로 예산 증가가 우려됨.
- 다양한 전통문화행사를 운영한 노하우가 있는 전문 민간업체가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우리나라의 문화 전문 인력에 대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기회 제공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재 보호 조례 제41조 제1항, 제2항(시 소유 문화재의 위탁운영)
 - ① 시장은 시 소유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시 소유 문화재의 관리 및 운영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할 수 있는 시 소유 문화재는 별표2와 같다.
- ※ [별표2] 운현궁, 경희궁, 남산골 한옥마을, 몽촌토성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나. 기타사항

- 운현궁 및 남산골 한옥마을 문화재시설 민간위탁 운영계획
(문화재과-14522, 2012.08.06)